인천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천대학교 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실험.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교내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 대학 및 부속기관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모든 연구실에 적용된다. <개정 2019.5.21.>
-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연구실"이란 본교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·장비·연구실험실·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헙실·실습실·실험준비실을 말한다. 〈개정 2019.5.21.〉
 - 2. "안전관리대상기관"이란 본교에서 교직원, 대학(원)생, 연구원이 실험.실습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실험.실습실, 연구실 소속 기관으로 대학(원), 연구소, 센터 등을 말한다.
 - 3. "안전관리총괄자" 란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로 총장을 말한다. <개정 2019.5.21.>
 - 4. "안전관리책임자" 란 연구실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총괄자의 지휘를 받아 해당 연구실 전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안전관리 대상기관의 대학(원)장, 연구소장, 센터장, 관장 등을 말한다.
 - 5. "연구실책임자" 란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 위.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.
 - 6. "안전관리담당자"란 각 연구실별로 지정되어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 - 7. "연구활동종사자"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, 대학(원)생, 연구원.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.
 - 8. "안전관리부서"란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조직을 말한다.
 - 9. "안전환경관리자"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책임자, 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에게 지도.조 언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.
 - 10. "안전점검"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. 〈신설 2019.5.21.〉
 - 11. "정밀안전진단"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

- 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·평가를 말한다. 〈신설 2019.5.21.〉
- 12. "연구실사고" 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·질병·신체장해·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·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. 〈신설 2019.5.21.〉
- 13. "중대 연구실사고"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. 〈신설 2019.5.21.〉
- 14. "유해인자"란 화학적·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. 〈신설 2019.5.21.〉
- 15. "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"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. 〈신설 2019.5.21.〉
- **제4조(연구실 안전환경 확보)**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2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

- 제5조(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본교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교내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각종 유해물질의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
 - 3. 연구실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 작성에 관한 사항
 - 4.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반 구성.운영에 관한 사항
 - 5. 신.개축 연구실 안전설비 확보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
 - 6. 안전관리 위반 연구실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
 - 7.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- 8. 그 밖에 연구실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 - ④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**제6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: 교학부총장, 사무처장, 안전관리부서장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

- 성 부서장 <개정 2018.8.1., 2019.5.21.>
- 2. 전문분야위원: 연구활동종사자 중 교학부총장이 임명하는 자
- 3.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〈개정 2019.5.21.〉
- ② 위원회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전문분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, 간사는 시설과장이 되고, 회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. <개정 2018.2.1., 2019.5.21>
- **제7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조직과 직무

- 제8조(연구실책임자의 임무) 안전관리대상기관의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며,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9.5.21.>
 - 1.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보고
 - 2.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〈개정 2019.5.21.〉
 - 3.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
 - 4. 각종 유해물질 및 실험폐기물관리
 - 5. 연구실 위험요인 사전보고 및 안내(독성 및 발암물질 등 유해위험물질) <신설 2019.5.21.>
 - 6.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
- 제9조(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) ① 연구실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연구실 안전 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5.21.〉
 -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정.부 2인을 둔다. 안전관리담당자 "정"은 해당 연구실의 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되며, 안전관리담당자 "부"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 서 안전관리담당자 "정"의 추천으로 안전관리책임자가 임명한다.
 - ③ 안전관리담당자(부)는 3개 이상의 연구실 지정을 할 수 없다.
 - ④ 안전관리담당자는 담당 연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 - 1. 연구실의 시설물, 장치,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.유지관리
 - 2.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
 - 3.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
 - 4.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보고
 - 5. 실험폐기물 분별수집 및 폐기의뢰

- 6.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
- **제10조(안전관리부서)**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시설과로 한다. <개정 2018.2.1., 2019.5.21.>
- 제11조(안전환경관리자) ① 총장은 안전환경관리자 3명을 지정하여야 하며, 그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5.21.〉
 - ②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신설 2019.5.21.〉
 - 1.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
 - 2.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
 - 3.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지도·조언
 - 4.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
 - 5.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
 - 6.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 - ③ 제1항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한다.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〈신설 2019.5.21.〉
 - 1. 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
 - 2. 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

제4장 안전관리

- 제12조(실험폐액 등의 수집 및 처리)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액 등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담당 연구실에서 배출된 실험폐액 등을 성실히 분별 수 집하여야 하며, 수집된 실험폐액 등은 시설과장에게 그 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.
 - ② 실험폐액 등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. 〈개정 2018.2.1.〉
- 제13조(연구실 안전점검 등)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담당 연구실에 대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.
 - ②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검출함과 동시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・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안전교육 등) ① 안전관리부서는 매 학년도마다 안전관리대상기관의 조교 및 대학(원)생 등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사고예방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안전관리대상기관의 실험.실습 수업을 포함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조교 및 대학(원)생 등은 안전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.
- ③ 총장은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이수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, 안전교육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, 안전관리책임자는 미 이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안전관리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대학(원)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연구실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교육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부서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.
- ⑥ 총장은 안전교육 · 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성적미열람 및 연구실 출입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 〈신설 2019.5.21.〉
- 제15조(행정조치 등) ① 위원회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결정할 수있다. 〈개정 2019.5.21.〉
 - ②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책임자는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5.21.〉

제5장 사고처리 및 조치

- 제16조(사고 조사 및 후속 대책 수립 등) ① 연구실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부서 주관 하에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여 그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확산 등 재 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5.21.〉
 - ②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책임자는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고 상태를 변경 및 훼손 없이 보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5.21.〉
 - ③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19.5.21.>
- 제17조(안전관리 기록.보존)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- 1. 안전관리담당자 임명에 관한 사항
 - 2. 연구실 안전점검표
 - 3. 연구실 학기별 안전점검보고서
 - 4.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기록부
 - 5. 연구실 안전사고보고서
- **제18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9조(준용) 그 밖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실험·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

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부칙 〈제425호, 2007.8.24.〉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제559호, 2010.2.26.〉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제775호, 2015.4.17.〉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45호, 2018.2.1.> (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
⑨인천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및 제10조와 제12조제1항 중 "시설팀장"을 "시설과장"으로, "시설팀"을 "시설과"로 한다.

부칙 〈제876호, 2018.8.1.〉 (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10조제5항14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인천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"부총장"을 "교학부총장"으로 "대학건설본부장"을 "사무처장"으로 한다.

⑧부터 ⑩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〈제898호, 2019.5.21.〉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